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A Study on the Organization of Fishing Village Cooperatives

張 謨 鎭

Soo-Ho Chang

目 次

- I. 序 論
- II. 漁村契組織의 現況과 그 類型
 - 1. 漁村契組織의 現況
 - 2. 漁村契의 類型
- III.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 1. 漁村契의 理念
 - 2. 漁村契의 目的
 - 3.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 IV. 漁村契組織의 本質과 原則
 - 1. 組織의 本質
 - 2. 漁村契組織의 特質
 - 3. 漁村契의 組織原則
- * V. 漁村契組織上의 諸問題
 - 1. 漁村契員의 資格上의 問題
 - 2. 契의 區域問題
- VI. 漁村契와 他水産協同체와의 關係
 - 1. 地區別水協과 漁村契
 - 2. 水協系統組織上의 漁村契의 位置
- VII. 漁村契組織의 方向 (結論)
 - 1. 將來의 漁村環境
 - 2. 漁村契의 育成方向
 - 3. 漁村契運動의 方向

I. 序 論

組織이란 人間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며 또한 人間을 위한 것이다. 특히 協同組合이라고 하는 組織은 經濟的 零細者가 大資本으로부터의 壓迫에 對抗하기 위하여 形成한 組織이기 때문에, 곧 人間이 資本에 대한 主人公으로서 자부할 수 있는 組織으로서의 特色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러한 協同組合은 無爲에 의한 所産이 아니고, 그러한 性格을 유지하기 위한 組合員의 평생의 組織形成運動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組織形成運動은 어떠한 種類의 協同組合에 있어서도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協同組合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個人主義的協同組合과 共同主義的協同組合이라고 하는 두 基本形態가 있으며 따라서 그 組織形成이 다르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보통 우리가 말하는 水産業 協同組合이나 農業協同組合, 中小企業協同組合이라고 하는 協同組合이란 그 構成員의 獨自的인 個人經濟를 전체로하여 그의 個別的 利益을 도모하기 위하여 만든 協同組合(個人主義的協同組合)이며, 이것은 그 構成員의 個人經濟와 그의 存續이 協同組合의 存續如何에 依存하고 있는 協同組合(共同主義的協同組合)과는 그 組織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本人은 여기에서 個人主義的協同組合과 共同主義的協同組合과의 組織形成을 비교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의 個人主義的協同組合에 속하는 漁村契의 組織形成運動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水協組織의 最末端下部組織이라고 하는 漁村契는 漁民을 위한, 漁民에 의한, 漁民의 組織으로서 그것이 어떠한 性格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維持存續

* V~VII은 차호 계속됨.

수 산 경 영 특 집

을 위하여 금후 어떠한 方向으로 그의 組織形成運動이 추진되어 가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나라의 現行制度를 中心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Ⅱ. 漁村契組織의 現況과 그 類型

1. 漁村契組織의 現況

먼저 既存 漁村契의 年度別 組織現況을 보면 1963년의 漁村契組織數는 1,905個였던 것이 1970年度에는 2,236個로 增加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1971년부터 오히려 減少되기 시작하여 1974年度에는 1,651個, 그리고 1976년에는 1,671個였으나 1977年 4月 水協의 漁村契實態調査에서는 1,650個로 나타났다.

1977年 4月 現在 各道別 組織狀況은 <表-1>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리고 이들 漁村契가 포함하고 있는 漁村自然部落數는 3,530個에 달하며 이것은 1個 漁村契單位로 보면 平均 2.1個의 漁村自然部落을 그 業務區域으로 하고 있다고 하겠다.

漁村契가 組織되어 있는 地域狀態를 보면, <表-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僻地와 落島에 所在하는 漁村契가 745個로서 全体에 대한 45.1%를 점하고 있다. 다음에는 <表-3>의 交通의 便宜度에서 보면, 첫째 自動車의 利用이 可能的한 漁村契는 1,048個로서 63.3%에 해당되며, 둘째로는 船便을 利用하는 漁村契數는 607個로서 곧 全体의 36.7%에 해당된다. 그리고 船便利用이 可能的한 漁村契中에서 定期船利用이 可能的한 漁村契數는 434個로서 곧 船便可能漁村契의 71.5%에 해당되며 全体 漁村契數의 26.2%에 해당된다. 그리고 定期船을 利用할 수 없는 典型的인 落島漁村契數가 173個로서 全体漁村契數의 10.5%나 占한다.

市道別 漁村契數

<表-1>		1977年 4月 現在								
區 分	總 計	京 畿	江 原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漁 村 契 數	(個) 1,650	108	76	114	61	704	157	333	97	
構 成 比	(%) 100	6.55	4.61	6.91	3.70	42.67	9.52	20.18	5.88	

資料: 水協 中央會

※ 새마을 漁村契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다음에 이들 漁村契의 行政區域上의 所在地를 살펴보면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里·洞에 所在하는 漁村契數가 1,497個로서 全体의 90.3%에 해당되며 邑·面所在地에 있는 漁村契數는 76個로서 全体의 5%에 불과하다. 그 이외에 市·郡所在地에 存在하는 것도 77個로서 4.7%에 해당된다.

이와같이 全体 漁村契의 90%이상이 里·洞에 所在한다고 하는 것은 地區別 水協事務所와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距離가 멀다는 것을 의미하며, 業務的인 面에서 또는 經濟交涉上에서도 대단히 不便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漁村契所在地分布

〈表-2〉

(單位: 漁村契數)

지 부 별	어촌계수	지 역 별		행 정 구 역				
		육 지	도 서	시	군	읍	면	리 동
경 기	108	33	75	4			4	100
강 원	76	76				3	4	69
충 남	114	99	15				1	113
전 북	61	41	20	3			2	56
전 남	704	297	407	11		2	22	669
경 북	157	138	19	5	1	2	5	144
경 남	333	221	112	51	1	1	19	261
계 주	97		97		1	3	8	85
계	1,650	905	745	74	3	11	65	1,497
구 성 비 (%)	100.0	54.9	45.1	4.5	0.2	0.7	4.3	90.3

組合의 所在地와 漁村契間의 距離는 〈表-4〉에서 보는 바와 같이 最長 40km 이상에 달하는 것이 194個 漁村契로서 全體의 11.8%에 달한다. 全漁村契의 57.4%에 해당되는 948個의 漁村契가 10km~40km의 거리에 位置하며, 20km~40km 거리의 漁村契가 494個로서 全體의 29.9%이고, 10km 미만의 거리를 가지는 漁村契는 508個로서 全體의 30.8%를 占한다. 그 중에서 5km 미만의 거리를 가지는 漁村契數는 275個로서 全體의 16.7%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같이 組合所在地와 漁村契間의 距離가 長距離라고 하는 것은 地區水協과 漁村契의 組織이 行政區域單位로 組織되고 있는 데서 오는 結果이나, 그것은 海岸線을 끼고 있는 限 불가피한 現象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距離上으로 보아 組合所在地와 漁村契所在地間에 小經濟圈이 分割 成立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速斷할 수 없다. 그리고 여기에서 注意해야 할 것은 漁村의 經濟圈은 所在地와의 關係보다는 隣近의 消費市場이나 貨物의 集散市場과의 關係에서 決定되는 것이므로 生産地인 漁村의 經濟圈問題는, 곧 隣近接의 消費市場과 貨物集散市場과의 調整에 관한 研究를 하지 않고는 쉽게 判斷할 수 없는 困難性이 있다. 적어도 漁村契가 經濟團體로서 存立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條件들이 具備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① 漁村契의 事業이 經營上 收支의 均衡을 維持할 수 있어야 하고

수 산 경 영 론 집

- ② 地域經濟의 中心的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하고
- ③ 漁民의 數(利用者數)가 많고 漁村의 特徵을 具備하고 있어야 하고
- ④ 그리고 漁村契의 運營과 漁民의 指導와의 關係에서 適切한 經營者 및 指導者가 있어야 한다.

漁村契의 組合과의 交通關係

<表-3>

(單位: 漁村契數)

지 부 별	차 편	선 편	정기선편	정기선편 이용율(%)
경 기	61	69	69	100.0
강 원	64			
충 남	101	24	18	75.0
전 북	33	20	18	90.0
전 남	369	352	240	68.2
경 북	92			
경 남	244	139	86	61.9
제 주	84	3	3	100.0
계	1,048	607	434	71.5
어촌계수 비율(%)	63.3	36.7	26.2	

組合과의 距離別 漁村契 分布

<表-4>

(單位: 漁村契數)

도 별	5km미만	5~10km	10~20km	20~40km	40km이상	계
경 기	4	4	14	47	39	108
강 원	31	9	22	14	—	76
충 남	5	2	18	53	36	114
전 북	14	3	16	14	14	61
전 남	91	101	190	228	94	704
경 북	42	28	61	26	—	157
경 남	60	67	99	99	8	333
제 주	28	19	34	13	3	97
계	275	233	454	494	194	1,650
구성비(%)	16.7	14.1	27.5	29.9	11.8	100.0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2. 漁村契의 類型

漁村契는 漁民을 主体로 한 協同組織이다. 그의 組織形態로서의 分類基準에 대해서는 一定한 定說이 없으며 있을 수도 없으나,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① 組織漁民의 種類 ② 所在地 ③ 機能發揮의 程度 등을 分類基準으로 設定하여 考察해 보고자 한다.

1) 組織漁民의 種類에 의한 區分

組織漁民의 種類에 의한 分類는 漁村契의 所有 또는 區域內에 存在하는 一般漁民의 漁業 種類에 의해서 區分되는 것으로서 1977年 4月 水協調查資料에 의해서 보면, 여기에는 漁船 漁業漁村契, 增養殖漁業漁村契 및 混合型漁村契 등으로 다시 三大別할 수 있다 (表-5 參照). 漁船漁業漁村契는 漁村契員의 대다수 또는 그의 絶對的인 生産基盤이 漁船漁業에 依存하고 있는 漁村契를 의미한다. 漁船漁業에는 第2種 및 第3種의 共同漁業에 속하는 漁業 및 定置網漁業과 其他 道知事 및 水産廳長이 許可 또는 免許하는 漁業을 包含한다. 增養殖漁業漁村契란 契員의 대다수 또는 生産基盤의 中軸가 貝類 및 海藻類의 增養殖業에 從事하거나 漁村契의 自營增養殖業에 依存하고 있는 漁村契로서, 增養殖業은 第1種共同漁業 및 養殖業과 内水面漁業(定置網 除外) 그리고 道知事 許可의 貝藻類採取漁業 등을 포함한다. <表-5>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7年 4月 現在, 全國 1,545個의 漁村契에 대한 組織漁民의 形態에 따른 그 類型別 分布를 보면 漁船漁業型 漁村契가 115個所로서 全漁村契의 7.44%를 占하고 있으며, 增養殖型漁村契數는 640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41.43%, 混合型漁村契數는 790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51.13%를 占하고 있다. 여기에서 漁村契의 類型으로 보아 가장 많

組織漁民의 種類에 의한 漁村契數

<表-5>

(單位: 漁村契數)

漁村契類型		道 別									總計	구성비(%)
		慶南	忠南	濟州	全南	京畿	全北	慶北	江原			
漁船漁業	漁業	31	16	—	16	18	18	5	11	115	7.44	
增養殖漁村契	第一種共同漁業	16	1	16	32	1	—	1	4	71	4.60	
	養殖業	22	21	—	399	11	5	1	—	459	29.71	
	第一種共同漁業, 養殖業	25	5	—	70	3	—	7	—	110	7.12	
混合型漁村契	漁業, 第一種共同漁業	41	2	70	42	21	6	67	40	289	18.71	
	漁業, 養殖	41	59	—	47	40	32	3	2	224	14.50	
	漁業, 養殖, 第一種共同	105	8	10	58	3	—	73	20	277	17.92	
小計		281	112	96	664	97	61	157	77	1,545	100	
	構 成 比(%)	18.19	7.25	6.21	42.98	6.28	3.95	10.16	4.98	100		

不明한 漁村契: 1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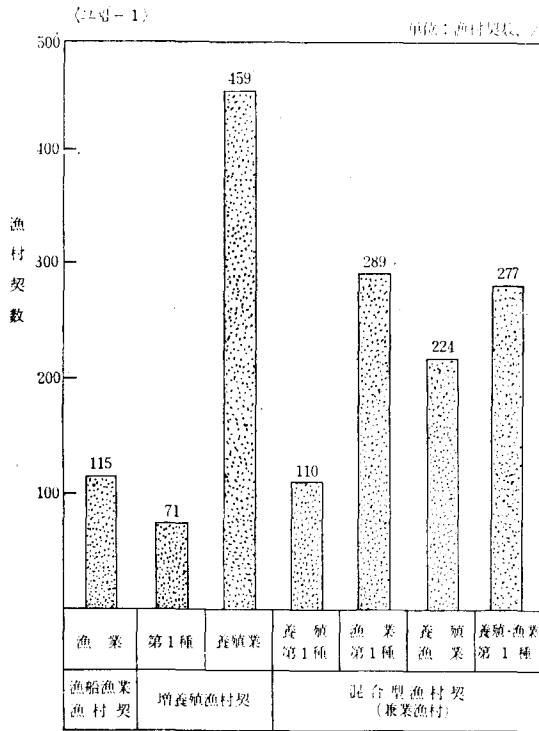
은 것은 混合型和 増養殖型으로서 그의 構成比는 비슷하나 전자가 若干 높으며 漁船漁業型 漁村契는 全体 漁村契의 1割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増養殖型 漁村契에서는 養殖漁業依存型이 459個所로서 全漁村契의 약 30%를 占하고 있으며 第一種 共同漁場依存型은 71個所로서 全体의 4.6%, 그리고 第一種 共同漁業과 養殖業依存型은 110 個所으로서 全体의 7.12%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混合型漁村契에 있어서 漁船漁業과 第一種共同漁業混合型은 289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18.71%에 해당되며 漁船漁業과 養殖業混合型은 224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14.50%, 그리고 漁船漁業, 養殖業 및 第一種共同漁業混合型은 277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17.92%를 나타내고 있다. 이상에서 설명한 것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그림-1)과 같다.

2) 所在地에 의한 區分

다음에 所在地에 의한 漁村契의 類型은 市, 郡, 邑, 面, 里, 洞 등의 所在地에 事務所를 두고 있다는 것을 根據로 區分한다든가 또

類型別漁村契分布(全國)



는 陸地와 島嶼 등의 地理的 條件에 의한 區分을 한다든가 혹은 그 所在地의 性格(都市, 시골 등)에 의해서 區分하는 경우가 있다.

이 중 行政單位所在地別 區分에 의한 類型은 곧 市所在地漁村契, 郡所在地漁村契 또는 里·洞所在地漁村契라고 하는 것으로서 1977年度 水協中央會의 漁村契實態調查報告書에서 보면 <表-6>에서 보는 바와 같다.

全國 1,650個의 漁村契中 市廳所在地에 있는 것이 74個로서 全体에 대한 4.5%를 占하며 郡廳所在地에 있는 것이 3個로서 0.2%, 邑·面所在地에 있는 것이 76個로서 全体의 5%를 占하고 있으나 壓倒的으로 많은 것은 里·洞에 所在하는 것으로 1,497個所에 달하며 全体에 대한 90.3%를 占하고 있다.

全國所在地를 陸地와 島嶼로 區分하여 보면 陸地의 漁村契가 905個所로서 全体의

54.9%, 島嶼漁村契는 745個所로서 全体에 대한 45.1%를 각각 占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所在地에 의한 漁村契의 類型은 바꾸어 말하면 都市漁村契나 또는 시골漁村契나를 의미하거나, 交通이 비교적 便利한 陸地漁村契나 혹은 交通이 不便한 僻地漁村契나를 의미하는 것이 된다.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表-6>

所在地別 漁村契數

區 分	合 計	地 域 別		行 政 區 域				
		陸 地	島 嶼	市	郡	邑	面	里·洞
漁村契數	1,650	905	745	74	3	11	65	1,497
構成比%	100.0	54.9	45.1	4.5	0.2	0.7	4.3	90.3

資料: 水協中央會

<表-7>

漁村契의 機能評價基準表

發展의 段階	共同基金	協業生産	運 營 管 理	指 導 者 確 保
自 立	100萬원	300萬원	收益配分 70萬원 (契員當 1萬원)	指 導 者 2名 會 計 員 1名
自 助	35萬원	100萬원	持 分 計 算	指 導 者 1名 會 計 員 1名
基 礎 準 備	14萬원		基本帳簿具備 (6種)	指 導 者 1名 指 導 者 養成

資料: 水協中央會

3) 機能發揮의 程度에 의한 區分

다음에 機能發揮의 程度에 의한 漁村契의 類型은 곧 漁村契의 各種 事業機能과 組織機能

成長度別 漁村契數

<表-8>

(單位: 漁村契數)

지 부 별	어 촌 계 수	성 장 도		
		자 립	자 조	기 초
경 기	108	31	56	21
강 원	76	19	41	16
충 남	114	33	78	3
전 북	61	12	47	2
전 남	704	187	412	105
경 북	157	97	60	
경 남	333	114	219	
계	97	71	26	
계	1,650	564	939	147
구 성 비(%)	100	34.2	56.9	8.9

등의 程度如何에 의해서 區分되는 것이다. 이 契機能發揮의 程度에 의한 漁村契의 類型에 대해서는 아직 資料의 不足으로 明白히 알 수 없으나, 종래 水協中央會에서 設定한 基準〈表-7참조〉에 의해서 보면 〈表-8〉에서 보는바와 같이 全國 1,650個所의 漁村契中 自立漁村契는 564個所로서 全體의 34.2%, 自助漁村契는 939個所로서 56.9%, 基礎漁村契는 147個所로서 8.9%를 각각 占하고 있다.

Ⅲ.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1. 漁村契의 理念

漁村契는 水協法 第16條의 2-①의 規定에 의해서 設立되는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으로써 構成되는 部落協同體이다. 이 漁村契가 同條 2-②의 規定에 의해서 法院에 登錄을 畢하게 되면 法人漁村契로 成立된다. 漁村契는 協同組合의 一種이기 때문에 漁村契의 理想은 곧 協同組合의 理想과 同一하다고 하겠다.

近代的 協同組合의 理想은 Rochdale의 先驅者들의 理想에서 유래되고 있다.¹⁾ 따라서 漁村契의 理想도 곧 Rochdale의 先驅者들의 理想과도 相通된다고 하겠다. Rochdale 先驅者의 理想은 『그들의 土地위에 自己들의 勞動에 의해서 自給의 共同體를 建設하는 것²⁾』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協同組合의 Common-wealth를 만드는 것이었다. 當時의 協同組合人은 그러한 理想의 協同組合이 經濟社會에 있어 外延的으로 發展하고 協同組合의 役割이 公共事業이나 私企業에 影響을 미치고 그의 不足한 點을 充足시킨다는 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協同組合의 開拓者들의 理想은 大體로 支配的인 經濟秩序와 對立하여 理想郷을 建設한다고 하는 空想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³⁾

그러나 그후에 協同組合의 目的은 단순히 組合員의 利益의 增進에만 그치지 않고 크게는 人類의 進歩와 福祉의 增進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점차 생각하게 되었다.

그러한 變化는 人類가 共同生活을 하는데 있어서 그 基準이 되는 生活原則의 性格에서 필연적으로 要求되었다고 생각된다. 즉, 그 理由는 人間에게는 無限히 獨立하고 싶어하는 慾求가 있는가 하면, 다른 面에서는 他人과 協同하여 共通된 일을 達成하려고 하는 慾求가 있기 때문이다. 곧 人間에게는 個別化의 慾求와 集團化의 慾求라고 하는 精神的 二重現象

1) 協同組合運動은 하나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며 또한 많은 失敗도 있었다. 英國에서도 1830年代에 시작된 協同組合은 거의 없어졌다. 그러나 그 理念은 그후 協同運動이 더욱 實제적이고 永續的인 형태로 되기까지 계승되었다. 이러한 失敗한 組合 중에서 1830年 機織職工들에 의해서 設立된 Rochdale 組合도 있었다. 그러나 그의 理想은 1844年 10月 24日 設立된 Rochdale 公正開拓者組合(The Rochdale Society of Equatable pioneers)에 의해서 계승되어 오늘날의 協同組合運動의 理想이 되고 있다.

2) 協同組合原則とその解明, 財團法人協同組合經營研究所 등 編集, 同研究所發行 1967. p. 16.

3) Helmut Faust Ursprung und Aufbruch der Genossenschaftsbewegung 1958. 小澤修譯 協同組合運動の先驅者たち家の出協會 pp. 3~24.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이 있기 때문에 絶對的인 封鎖나 獨立은 事實上 不可能했던 것이다. 漁村이란 漁民이나 漁夫가 사는 部落이나, 그것은 臨海村落으로서의 交通, 通信이 不便하며 漁民은 하루 종일, 數日 또는 數十日을 막막한 海上에서 生活하고 社交, 讀書 등과도 거리가 먼 生活樣式을 갖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漁村社會는 漁民 個個人的 힘으로써는 經濟的 目的 혹은 其他 目的의 達成이 不可能한 경우가 많고 거기에 協同的 行爲가 要求되고 있으나 그의 結合이 잘 안되고 있는 것이 漁村의 實情이다. 여기에서 漁民은 그것을 宿命으로 생각하게 되고, 自己도 모르게 어느덧 諦念感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人間에게는 本來 個人的 힘으로 目的達成이 不充分할 경우에는 他人과의 協同的 行爲를 取하려고 하는 것이 自然스러운 本能이었다.

人間은 社會的 存在이므로 이 本能은 人間本來의 것이다. 그러나 漁民은 數十年, 數百年來 漁村에서 共同生活를 계속해 오면서 『協同』이라는 커다란 可能性을 가지고 相互依存의 意識과 協同을 위한 努力을 하면서도 그것이 效果를 나타내지 못한 것은, 上述한 漁民의 諦念感이나 또는 그의 組織化에도 문제가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오히려 推進方法에 있었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에 本格的인 水協運動(漁村契運動을 포함함)이 制度化된 지는 불과 16~17年 밖에 되지 않으나 近代의 協同運動이 시작된 지는 벌써 70年이란 年輪이 지났으며 其間 많은 成果도 나타냈다.⁴⁾ 여기에 우리는 욕심을 더 내어 그의 效果增進을 위하여 새로운 課題로서 漁村契를 設定하려고 하고 있다. 이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漁村契運動의 理想, 곧 理念의 設定이다. 『理想이 가지는 가장 아름다운 作用은 實現이 아니고 理想을 求하는 鬭爭 곧 現實의 樂園을 求하는 鬭爭』이라 한다. 이 鬭爭이야말로 人間의 崇高한 精神을 鼓舞시키고 무엇이 善인가를 理解시키는 源泉이다. 理想은 하나의 高次的인 存在를 指向한다. 理想이 없는 漁村契運動은 올바른 內容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生命이 없는 마른 갈대와도 같은 것이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社會權利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企業形態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水協運動에 있어서 理想보다도 業務가 優先해야 한다는 말을 過去에 많이 들어왔다. 물론 水協은 國民經濟속에 하나의 獨立組織으로서 存在하고 있으므로 合理的인 組織을 가지는 環境의 規則과 合法則性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水協이 經濟的인 果實을 實現시키지 않으면 組合員(漁民)으로부터 敬遠視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水協의 事業은 經濟事業을 中軸으로 하며 그것은 協同組合으로서의 第一位의 目的이 되고 있다. 그러나 水協運動은 그것만이 唯一한 內容이 아니다. 이 점을 우리는 소홀히 해왔다. 法人 漁村契의 경우는 漁民의 日常生活의 根據地인 村落을 基本土臺로 한 人間集團이며 그것은

4) 우리나라의 近代의 協同組合運動은 1907年 舊韓國勅令으로 된 地方金融組合規則에 의해서 農業小額金融을 目的으로 한 金融組合

經濟萬能의 團體라고만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거기에는 契員의 利益만이 아니라 社會正義가 있어야 한다. 社會正義는 經濟學的 概念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經濟學者들에게는 空想主義 또는 精神主義라고 非難받으려는 모르나 協同體로서의 漁村契는 事業의 能率面에서 뿐만 아니라 人間生活을 物質的, 動物的인 것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道德的 社會的 價値에 貢獻하는 存在로서 認識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 의미에서 漁村契는 人的 結合이라고 하는 humanism에 基礎를 두어야 하는 것이다. humanism을 빼고서는 漁村契의 協同運動을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humanism을 基底로 하는 漁村契의 理念은 여하히 파악되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는 4가지의 規準에서 設定되어야 할 것이다. 곧 ① 自發性, ② 協同性, ③ 多元的 協同의 紐帶性 및 ④ 運動性이다.⁵⁾

(가) 自發性; 漁村契는 漁民인 構成員의 性格과 그의 主体性에서 반드시 自發的인 組織體가 아니어서는 안된다. 漁村契의 自發性이란 契員의 自發性和 契 自体의 自主性을 포함한다. 곧 첫째, 漁村契는 그것을 組織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漁民에 의해서 自發적으로 目的적으로 組織되어야 한다. 따라서 理念的으로는 他의 第三者, 既成組織 또는 權力에 의해서 強制되어 他律적으로 組織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둘째로, 漁村契 그 自体는 他로부터의 強制를 받지 않고 自主적으로 活動되어야 하는 것이다. 곧 官僚的 統制에 從屬하지 않는 것이 本來의 存在意識인 것이다.

(나) 協同性; 協同性이란 構成員의 membership 곧 協同의 組織을 의미한다. 協同의 組織이란 漁民이라는 特定の 歷史的, 社會的인 性格을 가지는 者를 構成員으로 하여 그 構成員의 經濟的 社會的 利益을 促進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自主的 協同組織을 의미한다.

協同이란 단순히 '힘을 모으고 있다'고 하는 事實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內容으로서의 membership 곧 漁村契의 組織構成員으로서 誓約하고 積極적으로 活動에 參加하고 있는 實績 및 그것을 支持하는 理念이 없으면 안된다. 協同體 自体를 尊重하는 觀念과 實行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徹底性이 금후 漁村契의 協同運動의 一般的 基底가 되어야 할 것이며 여기에 또한 漁民을 構成員으로 하는 漁村契組織의 必然性이 있는 것이다.

(다) 多元的 協同紐帶; 漁村契의 協同에는 構成員 相互間을 連結하는 紐帶가 없으면 안된다. 協同의 紐帶는 실로 多元的인 要素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 예를 들면 地域性, 業種性, 基本資源의 共同性, 階級性, 階層性 등등이다. 漁村契의 構成員은 漁村 곧 部落이라고 하는 地域的集團性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와같은 地域性이 가장 강한 紐帶로 되었을 때 業種性이나 階層性은 地域性에 吸收되고 마는 것이다. 地區別水協이 販賣, 購買, 信用, 利用 등의 諸事業을 兼營하여 그 市·郡이라는

5) 黑譯一清教授는 그 著書 協同組合論(1974年 pp. 40~43)에서 協同組合의 理念에 協同組合 獨自의 理念이 發生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것을 自發性, membership, 協同의 紐帶의 多元性, 運動性에서 들고 있다.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地域의 各種水産業을 經營하는 業種別 水産業者를 一括 構成員으로 하여 水協의 中軸勢力으로 삼고 있는 것은 漁村部落이라는 單位地域의 集合體로서 그의 機能을 發揮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 成果를 보다 더 效果的으로 遂行하고자 單位地域內의 協同을 組織化하려고 하는 것이 漁村契 設立의 目的이다. 물론 業種의 大規模化에 따라 業種의 分化和 發展, 階層分化的 進展에 수반하여 業種別組織, 階層別組織이 出現하고 있으며 이것에 의해서 集合社會인 廣範한 地域的 組織의 內部的 變化도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同質의 追求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다. 漁村契는 이 地域性에 資源의 共同性이 密着되어 그 特性을 나타내는 것이다. 곧 漁村契에 있어서 共同漁場을 生産의 基本的 條件으로 하며, 漁村契가 이것을 共同管理, 運營하는 機能을 가질 때 構成員의 共同體의 紐帶가 가장 強力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라) 運動性; 漁村契라는 組織은 본래 目的意識으로 結成되며 必然的으로 하나의 社會運動(Social movement)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漁民의 團結을 일면에서는 危險視할지도 모르나 協同組合이 政黨이나 勞動組合活動과는 달리 土俗的, 經濟的 目的을 가지고, 보다 安全한 組織으로서 存續된지 이미 오래 되었다. 그러나 過去 協同組合의 歷史를 보면 반드시 平坦한 것만은 아니었다. 이것은 금후 漁村契의 將來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이유는 漁民이라고 하는 下層民의 社會的, 經濟的, 地位가 問題視되는 것과 같은 社會에서는 漁民의 協同運動은 그의 改善을 위한 活動組織으로서 항상 再論되고 再生되어 脚光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協同組織이 結成되었다고만 해서 곧 目的이 充分히 達成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構成員의 獲得과 確保, 끊임없는 協同없이는 協同運動의 成功的 前進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協同組織이란 본래 그 組織의 性格上 항상 周邊의 營利企業體나 혹은 政府와의 交涉過程 속에서만 存在, 發展하여 왔다. 協同組織體는 험한 世上으로부터 孤立된 樂園은 아니었다. 그러므로 漁村契도 協同組織體인 이상 항상 構成員 相互間 또는 外部에 대하여 모든 面에서 새마을運動과 같은 一種의 社會運動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상에서 볼때 漁村契의 理念이란 결국 協同組合의 理想實現을 위하여 多數漁民이라고 하는 社會階層의 經濟的, 社會的 環境의 현저한 變化에 對處해 갈 수 있는 漁村契 自體의 體質形成과 契員의 意見에 基礎를 두고 事業活動을 展開할 수 있는 運營體의 實現에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겠다.

2. 漁村契의 目的

漁村契의 目的에 대해서는 水協法의 制定 당초에는 明示된 것이 없었으나, 1963年 12月 5日の 改正 水協法에 의하면 『地區別 漁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公共事業을 營爲하기 위하여 1個 또는 數個部落 또는 里·洞을 業務區域으로 하는 漁村契를 組織할 수 있다.』(同法 第

11條의 2-①)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면 漁村契의 設立 目的은 『公共事業을 營爲하기 위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1976年 12月 改正된 現行 水協法上에서는 막연하게 『地區別 水産業協同組合의 組合員은 行政區域, 經濟圈 등을 中心으로 漁村契(새마을養殖契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組織할 수 있으며』라고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서 行政區域, 經濟圈이란 漁村契의 業務區域을 設定하는 基準이며 그것은 구체적으로는 水協法施行令 第2條 區域의 但書에 의하면 『공동어장의 合理的인 운영과 協업事業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한 수개부락 또는 이·동을 구역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勿論 漁村契의 區域을 決定하는 根據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 規定에 의하면 漁村契의 設立目的 中에는 곧 『共同漁場의 合理的인 運營과 協業事業의 추진 등』이 포함되고 있으나 漁村契의 主要目的은 이 이외에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와같이 본다면 漁村契의 本來의 目的은 地區水協의 目的과 差異가 있을 것으로 解釋되나 法의 設立目的에서는 사실상 差異가 없게 규정하고 있다. 곧 水協法施行令 第1條 및 水産廳 告示 第11號의 漁村契 定款例에 의하면 『漁村契는 漁村契員의 生産力의 增進과 生活向上을 위한 公共事業의 遂行 및 그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을 圖謀함을 目的으로 한다』라고 規定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漁村契는 地區別 水協과 法律上의 目的을 같이 한다. 그것은 漁村契가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으로서 構成되며 따라서 地區別 水協의 산하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包括的으로는 地區別 水協의 目的을 계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漁村契는 『地區別 水協의 事業을 效率的으로 推進하기 위하여 組織되는 漁民團體』라고 할 수 있다.

水協의 目的은 水協法 第6條에 보면 『組合員 또는 會員을 위하여 差別없이 直接 最大의 奉仕를 하여야 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따라서 漁村契도 契員을 위하여 직접 最大의 奉仕를 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다. 漁村契의 目的을 이와같이 規定하면 漁村契가 目的達成을 위한 手段으로서 地區別水協의 모든 事業을 取扱하느냐, 혹은 어느 特殊部門事業만을 取扱하느냐의 問題가 成立될 수 있다. 그러나 일단 理論的으로는 漁村契가 모든 事業取扱이 可能하다 하더라도 實際的으로는 當該 漁村契에서 實行possible한 事業의 運營에 限定될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볼 때 漁村契에서 實行possible한 事業으로서 가장 普遍的인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考慮할 때 現實的으로는 共同漁業權管理를 中心으로 하는 共同事業이라 할 수 있다. 곧 전술한 바와 같은 法의 規定에서 보아 漁村契는 共同漁業權漁業의 共同化(協業化)와 契員漁民의 零細性을 脱皮시키기 위하여 漁業의 協業化를 推進하는 指導者로서의 機能을 發揮하는데 具體的인 目的을 두고 있는 協同組織이라 할 수 있다.

물론 漁村契의 目的은 終局的으로는 契員自身들의 利益을 위한 共同事業의 수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向上이라고 하는데 關聯된 各種 事業을 基礎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로 하는 보다 더 큰 메다 두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더욱 意義 깊은 곳에 目的을 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漁村契가 이와같이 高次的인 데 目的을 두고 또한 두어야 한다면, 그것을 達成하기 爲해서는 단순한 物質的인 手段 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精神的 手段까지도 반드시 수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곧 漁村契는 먼저 契員을 위하여 富를 形成하는 동시에 사람을 形成하는 人間共同體가 아니어서는 그러한 高次元的인 目的을 達成하기 困難할 것이다. 換言하면 漁村契는 契員으로 하여금 所得 곧 富와 人格을 兼備한 者를 形成하는 데 目的을 두지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兼備者를 契員으로 가지는 漁村契가 全國 沿岸에 組織되어 그것이 一濟히 協同運動(혹은 새마을運動이라 해도 좋음)을 할 때 漁民은 더욱 富強해지고 漁村經濟는 윤택해지며, 漁村社會는 明朗하고 平和로와져서 漁民은 人生의 幸福과 悅樂을 享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나아가 漁民은 經濟的, 社會的 地位가 向上되는 것이다.

漁村契는 이와같이 豊饒하고 平和로운 漁村社會의 建設을 위한 協同推進體라고 하는데 그의 存在의 意義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나아가 全國民의 利益과 幸福을 增進시키고 國民全體의 共存共營을 達成하는 데 寄與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漁村契가 理想으로 하는 目的은 上述한 바와 같은 高遠하고 至大한 데 두고 있다고 하겠으나 現實에 있어서는 우선 共同漁業權管理나 零細漁業의 協業化를 推進하는 組織機能을 發揮함으로써 契員에 最大奉仕함을 직접적인 目的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된다.

3.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

1) 制度的 意味

漁村契는 하나의 制度이다. 여기에서 制度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의 意味로 解釋해 두고자 한다. 첫째의 意味는 狹義의 制度 곧 法律上의 制度와 事實上의 制度이다. 協同組合의 發達過程에서 보면 후자의 事實上의 制度로서의 協同組合이 先行하고 그것이 후에 法律上의 制度로 確立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漁民의 協同體는 法律上의 制度가 先行하고 왔다. 漁民의 協同體인 各種의 契가 古來로부터 상당히 많이 存在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보기이다. 古文獻에 의하면 漁夫契, 漁網契, 漁船契, 漁業契, 藿契, 船具契, 船村契 등⁶⁾ 여러가지가 있으며 또한 日本의 猪谷善一氏도 「契의 種類에는 漁網船의 共同使用을 目的으로 하는 漁網契, 船契와 같은 것도 있다」⁷⁾고 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日帝侵略下에 있어서 植民地 漁業收奪의 官制團體인 漁業組合의 組織을 위하여 漁村契라고 하는 任意組織(事實上의 制度)을 利用

6) 契의 名稱에는 稷, 契 등이 있으나 여기에서는 契로 統一했음. 그리고 契에 관한 研究로서는 金三守著 韓國社會經濟史研究 博英社 1964.2 參照.

7) 猪谷善一著 朝鮮經濟史. 大鑿閣 發行. 1928.5, p.37

한 흔적이 있다. 예를 들면 慶北의 厚浦漁業組合의 沿革을 보면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組合設立의 機運은 멀리 1924年(大正三年)의 봄 平海面 沿岸 各郡 部落存住漁業者로 하여금 漁業稷를 組織하여 事務所를 厚浦里에 두고 약간의 負擔金을 徵收하여 오로지 漁業者의 共存共營을 도모함과 동시에 稷員의 遭難求濟等 內容의 充實을 보게되어 漸次 稷員의 增加를 보게되고, 더욱 躍進하는 情勢에 따라 漁村維持經營의 必要性을 自覺하여 여기에 組合設立을 提唱하여……』⁸⁾라고 하고 있다.

이와같이 法律上的 團體를 組織하기 전에 事實上的 制度로서 漁業契를 組織케 하였으며 그것을 후에 總督府 漁業令에 의한 法律制度上的 漁業組合의 設立에 利用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예는 비단 厚浦漁業組合에 限한 것이 아니고 그외의 많은 地域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事實은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近代的인 協同組合의 設立過程에 있어서 事實上的 制度인 漁業에 관한 契와 같은 類似協同체가 存在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契가 日帝下의 宿命的인 漁業組合(또는 水産組合)의 設立에서도 利用되었던 것이나, 그러한 것이 1962年 水産業協同組合法의 制定으로 法律上的 制度로서의 漁村契의 탄생을 보게 되었다고 하겠다. 水協法上에서 漁村契라고 하는 名稱도 그러한데서 緣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나 現任의 漁村契의 組織은 事實上的 漁村契를 法律化한 것이 아니고 곧 先行組織이 없었던 것이나 水協法의 制定과 同時에 法律制度로서 創設된 獨自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우기 1976年(法 2986號) 水協法 改正에서 漁村契에 法人格을 부여하게 된 것은 더욱 法律上的 制度를 明確化한 것이라 생각되며 歷史的 意義가 있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制度의 二面性에서 볼 때 漁村契의 本質的 側面은 事實上的 協同運動이라야 할 것이며 法律制度는 그의 外皮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둘째의 意味는 廣義로 解釋되는 制度의 경우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의 解釋方法이 있다. 그 하나는 漁村契가 그 속에 形成되고 設立되는 社會體制와 그것과의 關係에 있어서 規定되는 漁村契의 性格이다. 다음은 그러한 體制와 漁村契와의 機能關係로서의 制度이다.

漁村契의 本質은 漁村契 그 自体의 特性으로 보아 “漁業權管理團體”임은 틀림이 없으나 동시에 그것은 體制와의 關係에 있어서 具體化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他面에서 보면 漁村契는 社會의 機能體系에 있어서 Sub-system으로서의 體制關係에서 具體的인 役割을 받아 機能한다. 이러한 體制關係에 있어서 漁村契의 性格 및 그의 社會體制에 있어서 役割機能의 內容이 漁村契의 主体성과 漁村契 自体를 둘러 싸고있는 制度的 環境과의 相互關係에 의해서 規定되어야 한다.

8) 朝鮮漁業組合中央會編, 朝鮮漁業組合要覽 1942, p. 93.

2) 漁村契의 人格

漁村契는 水協法 第16條의 2-②의 規定에 의해서 漁村契가 法院에 一定한 手續節次를 밟음으로써 法人格을 取得할 수 있는 協同體이다.

法人이란 自然人이 아닌 것으로서 法律에 의하여 人格을 認定받는 것을 의미한다. 民法 31條에 의하면 『法人은 法律의 規定에 依함이 아니면 成立하지 못한다』라고 規定하고 있으며 漁村契는 水協法 第16條 2-②에 의해서 水産廳長의 認可를 받아 法人으로 하였을 때는 이 民法 第31條의 規定에 해당하는 것이다. 곧 法人漁村契는 法律上 正式 法人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다같이 水協法의 規定에 의하여(水協法 第16條의 2-①)設立된 漁村契이면서 水協法의 公布實施후 十數年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다시 法人格을 부여하고자 하는 目的은 어디에서 있으며 法人格을 가지는 漁村契와 法人格이 없는 漁村契는 어떻게 다른가?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協同運動의 變化에 있다고 하겠으나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의 경우는 漁村契는 經濟活動을 行하는 것을 主要機能으로 하는 經營體이므로 현재의 經濟機構 속에서 經濟事業을 圓滑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漁村契의 內部를 充實히 하고 外部로는 信用力과 對抗力을 強化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漁村契의 活動을 위해서도 必要適切하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이라 하겠다.

다음에 法人漁村契와 法人이 아닌 漁村契의 差異點은 첫째는, 法律上의 人格을 가졌느냐 갖지 못했느냐의 點에 있으며 둘째는, 그 法人格에 의해서 內部的으로는 責任과 權限의 程度의 差異가 있으며 外部的으로는 信用과 對抗力의 強弱이 있을 뿐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法人格을 가지지 못한 漁村契는 그것이 아무리 水協法 第16條의 2-①에 의해서 設立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活動은 民法上의 任意團體의 경우와 同一하다고 하겠다.

法人이라고 할 때 거기에도 여러가지 種類가 있으며 제각기 性格을 달리하는 것이다. 一般적으로 法人에는 그의 法人的 性格에 의해서 ① 社團法人과 財團法人 ② 營利法人과 非營利法人 ③ 私法人과 公法人 등으로 分類된다. 이러한 法人種類의 特徵을 檢討함으로써 法人漁村契의 性格을 把握規定해 두고자 한다.

營利法人이란 株式會社 등과 같이 法人自身이 오로지 營利를 得하여 그것을 構成員에 分配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의미하며, 非營利法人이란 營利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는 法人을 의미한다. 이 의미에서 漁村契는 非營利法人에 해당된다. 非營利法人에는 積極的으로 社會全體의 公益(利益)을 目的으로 하는 公益法人과 그리고 公益을 目的으로 하지 않으나 構成員에 直接 그의 事業을 利用시킴으로써 構成員에게만 奉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는 中間的 非營利法人으로 區別된다. 이 점에서 漁村契는 前述한 바와 같이 그의 目的이 契員의 公共事業을 營爲하기 위한 데 있으므로, 곧 構成員을 위하여 직접 奉仕하는 것을 目的으로 하고 있으므로, 후자에 속하는 非營利法人이라 할 수 있다.

다음에 社團法人이란 2人이상의 사람이 社團을 組織하고 스스로 그 社團의 構成員이 될 것을 目的으로 하는 人的 集合體를 의미하며, 財團法人이란 營利 아닌 事業을 目的으로 하며 그 目的을 達成하기 위하여 일정한 財産을 提供한 公 財産의 集合體이다.

여기에서 볼 때 漁村契는 漁民의 協同組織體로서 社團法人의 性格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나 純粹한 社團法人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세째로는 法人을 公法人과 私法人으로 分類할 때 여기에는 그의 區別의 標準이 반드시 統一된 것은 아니나, 一般적으로 法人의 設立이 強制되든가 法人에의 加入이 強制되든가 하는 점과 또는 法人의 任員이 國家에 의해서 任命되든가 하는 것은 公法人이 되며 그러한 것이 없는 것은 私法人으로 規定하고 있다. 漁村契는 契運營의 監督權限等, 契에 대한 公權力이 加해지는 것이 없으며 또한 設立 및 管理面에 있어서도 必要最少量의 水協監督權限을 除하고는 전혀 自主的인 團體임으로 私法人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法人漁村契는 營利法人이나 公法人에게도 屬하지 않는 中間的인 非營利法人임과 동시에 公權力이 排除되는 私法人으로서의 法人格을 갖는 團體라 할 수 있다. 따라서 法人漁村契는 共同漁業權管理團體인 동시에 漁民의 協同事業의 推進體로서 二面的 性格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⁹⁾

IV. 漁村契組織의 本質과 原則

1. 組織의 本質

組織이라고 하는 말에는 “同一系統의 細胞의 集合” 또는 “人間과 物이 結合하여 만든 秩序있는 團體”라든가 또는 “組織體”와 “組織의 힘 곧 機能”을 뜻하는 경우도 있다.¹⁰⁾

組織의 뜻이야 어떠한 現代社會에 있어서 個人이란 어떠한 形式이든 組織을 떠나서 생활할 수 없게 되어있다. 個人은 組織에 參加함으로써 自己의 理想을 實現하고 地位나 權限에의 慾求를 充足한다. 個人이 他人과 協同하고 團結과 相互信賴라고 하는 人間的 慾求를 充足하고 他人과의 友情關係를 가질 수 있는 동시에 自己의 生活維持에 필요한 所得을 얻기 위하여 共同의 目的을 형성한다. 따라서 個人은 어떤 組織의 一員으로서 組織의 目的에 貢獻함으로써 自己일에 充實하고 創造性을 發揮할 수 있게 되어 人間的인 成長을 하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現代社會를 組織社會(Organizational Society)라고도 한다.

漁民이 漁村契를 組織하는 것은 漁村契라는 組織을 통하여 그들의 經濟的 慾求와 非經濟的인 慾求를 充足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漁村契란 組織은 漁民 스스로를 위해서 存在하는 것이며, 漁民이 漁村契를 위하여 存在하는 것은 아니다. 漁民은 漁村契를 組織함으로써 漁業에 있어서 보다 有效하게 自己의 營利目的을 達成하게 된다.

9) 張庚鶴著 民法大意(全) 法文社 1976. 1, pp. 52~59 參照

10) 三浦虎六著 現代農協經營論, 全國協同出版株式會社 1967, p. 5.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그러나 漁村契는 일단 구성되면 그 자체는 하나의 有機體로서 獨立된 生命을 가지는 것이다. 예를 들면 漁家에서 家族의 한사람 한사람은 獨立의 存在이나 이 個人의 家族이 一體가 되어서 漁家를 組織하여 社會經濟에 獨立된 存在로서의 生命을 가지는 것과 같다. 이러한 漁家の 組織體가 漁村이라는 部落에 發展하여 部落의인 組織體를 形成하고 있는 것이 漁村契이다.

2. 漁村契 組織의 特質

漁村契의 組織에는 다음과 같은 特質이 있다.

1) 漁村契는 漁民을 위한 組織이다.

漁村契는 “漁民에 의한, 漁民을 위한, 漁民의 組織”¹¹⁾이라 할 수 있다. 곧 漁民의 自主性을 基本으로 하여, 漁民을 위해서, 漁民이 만든 組織이다. 우리나라의 水協運動은 日帝下의 宿命組合인 漁業組合에서 1962年 갑자기 自發的인 協同組織運動으로 轉換되었으나 經營措置로서 行政的 指導에 의하여 漁業組織의 財産을 繼承하게 됨으로써 官制組合의 印象을 불식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法律上 入漁權의 認定과 組合員資格에 있어서의 漁業純粹性의 低位性 등은 있으나 사실상에 있어서는 ‘漁場은 漁民으로’라고 하는 漁民의 經濟的, 社會的 地位의 向上, 즉 水協運動의 目的에 의하여 非漁民의 利害의 支配에서 完全히 벗어나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최근(1976年 12月 改正 水協法 이래)에 와서 高度經濟成長에 수반하여 農漁民과 都市生活者 또는 農民과 漁民의 所得격차가 擴大됨에 따라 漁民所得增大를 위한 水協運動의 一環으로서 漁村契運動의 強化를 認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이제야 漁民의 主体性, 自主性, 自立性을 기초로 하는 漁村契協同運動體로서의 漁村契運動이 제 자리를 찾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금후 高度經濟成長과 工業化가 촉진되면 될수록 이러한 漁民의 協同運動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리라 생각된다.

2) 漁村契는 協同組織運動의 理念을 가지고 있다.

協同組織의 理念과 漁村契에 대해서는 前章의 漁村契의 制度的 性格에서 論述했으나 그것을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요약하면 漁村契 理念의 眼目は ① 民主主義的 運營과 ② 資本收奪에의 抵抗이라 하겠다.

漁村契의 民主的 運營은 간단히 말하면 自由, 平等, 博愛를 內容으로 한다. 이것은 漁村契의 組織이 加入脫退의 自由를 理由로 하고있기 때문이다. 이는 過去 日帝下의 漁業組合 등에 있어서의 強制加入組織과는 區別된다. 平等의 理念은 議決權, 選舉權의 1人1票主義에 의해서 實踐되며 博愛는 모든 사람들의 福利를 위해서 契員의 利益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非契員에 대한 事業利用制度에 의해서 認定되고 있다.

11) 이 말은 南北戰爭 當時 美國의 링컨大統領이 1863年 戰死者의 墓에 바친 名詞에서 由來한 美國 農業協同組合運動의 理念에서 따온 것이다.

수 산 경 영 문 집

다음에 資本收奪에 대한 抵抗이란 곧 漁民의 組織力을 통한 自己防禦를 의미한다. 高度經濟成長과 더불어 獨占資本의 巨大한 壓力과 水産政治, 水産政策의 빈곤이 意識되고 있는 現代에 있어서는 漁民의 生活과 漁業經營의 安全을 위해서 漁民은 스스로의 組織力에 의해 自己防禦를 함으로써 나아가서는 풍요한 社會生活을 갖기위해 漁村契라고 하는 利益共同체가 不可缺한 것이다. 資本主義社會에 있어서는 資本이 第1位的 要件이므로 漁村契의 組織도 人間要素와 資本的 要素를 서로 結合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現在의 漁村契는 漁業權共同管理와 協業推進체로서의 非出資組織이나 契員의 賦課金을 義務로 하는 準經濟機能을 強化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4) 漁村契는 漁業權管理체 또는 協業推進체이다.

漁村契는 地區別 水協의 組合員으로 구성되고 있다. 水協의 組織을 그의 發展過程에서 보면 漁村(部落)의 相互組織에서 發達한 것으로 地域社會集團(community)의 結合과 連帶性을 가지고 있다. 곧 集合社會集團이었다. 이러한 集合社會集團의인 水協運動은 同一社會에 있어서 農協과의 併立 및 漁村의 都市化에의하여 脫水産化에서 水協도 점차 利益集團社會化 되어갔으나 漁民의 協同強化와 그의 效果의인 發展을 위하여 沿岸部落에 있어서 漁業에 관한 共同目的을 위하여 結合된 部落内の 漁民組織으로서 漁村契의 活動이 필요하게 되었다. 따라서 漁村契는 地域社會의 結合과 連帶性에서 離脱하여 漁業에 관한 特定目的을 가지는 利害關係로 結合되는 利益社會集團(Association)이라 하겠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漁村契의 組織은 水協法에 의한 無限責任組織이다.¹²⁾ 이것은 漁村契가 法律上 原則的으로 非出資制로서 出資 組合員으로 構成되고 있는 水協의 組合員의 責任과는 달리 連帶無限責任이다. 이것은 漁村都市化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漁民의 市民化에 의한 移動性이 심해가는 점에서 보면 아주 부당한 規定이라 하겠으나(漁民으로 存在하고) 契員으로 있는 限, 漁村에 있어서 漁民이란 部落과 더불어 生活하고 部落地先에 있는 漁場을 生産의 第一要素로 하고 있는데서 地域社會를 떠나서는 漁村契를 생각할 수 없으며 따라서 漁村契의 組織은 地域社會의 連帶性보다는 利益性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즉 漁村契의 組織을 法律上 無限責任制로 規定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3. 漁村契의 組織原則

漁村契는 漁民으로서 構成되는 協同組合의 一種이다. 그러므로 漁村契의 組織은 原則的으로 協同組合의 組織原則에 따르지 않을 수 없다.

協同組合의 組織原則은 Rochdale 公正開拓者組合의 誕生으로 그에 의해서 採用된 組織의 構成 및 運營上의 原則이 英國 및 世界各國의 協同組合運動의 經驗을 통하여 檢討되고 그의 實績에 의해서 오늘날의 協同組合의 組織原則으로서까지 成熟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

12) 「수협법 시행령 제8조(계원의 책임)—① 계가 그 재산으로써 계가 부담하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계원은 연대로 그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여 連帶無限責任組織이 되어 있다.

漁村契組織에 관한 研究

라서 協同組合의 組織原則이라 하면 곧 Rochdale의 原則을 의미하게 되어있다.¹³⁾

그러나 協同組合은 歷史的 存在이며 또한 그의 存立하는 社會體制에 대해서 從屬的인 存在이기 때문에 協同組合의 性格이나 그의 組織原則에 관해서는 萬古不變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곧 資本主義經濟가 發展形成하여 오는 過程에서 協同組合의 組織도 現在의 典型을 形成하게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하나의 理念型으로 確定되어 理論的으로나 實踐的으로 有益한 存在가 되었다고 하겠다.

現在 世界의 協同組合에서 採擇하고 있는 組織原則은 上述한 Rochdale原則을 基礎로 하여 1963年 英國의 “본마스”에서 開催된 第22回 大會에서 選出된 專門家委員會에 의해서 檢討된 結果를 토대로 하여 1966年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開催된 第23回 ICA大會에서 再確認된 것이다. 여기에는 ① 加入脫退 自由의 原則 ② 1人1票制의 原則 ③ 利用分量配分의 原則 ④ 資本利子 制限의 原則 ⑤ 教育促進의 原則 ⑥ 協同組合間의 協同原則이 있다. 이러한 協同組合의 組織原則은 過去와 現在 또는 豫測可能한 먼 將來에 있어서도 變化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장 基本的인 四大原則(①~④)과 거기에 各 協同組合에서 任意로 採擇할 수 있는 獎勵的인 任意適用原則으로 構成되고 있다. 이상에서 ①~④까지의 四大基本原則은 또한 ICA 加入에서 必須履行原則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⑤~⑥은 各 協同組合에 대한 任意適用原則이나 國際的으로 獎勵할 必要가 있는 原則으로 規定하고 있다. 특히 四大基本原則이 遵守되지 않는 協同團體는 類似協同體로서 協同組合과 區別한다는 것을 明白히 하고 있는 것이다.¹⁴⁾

이상과 같은 점에서 볼 때 漁村契가 協同組合의 一種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四大基本組織原則을 遵守해야 하고 其他漁村契의 實情에 따라 必要한 任意的 原則도 採擇해야 할 것이다. 만약 여기에서 四大基本精神中 어느 하나의 原則이라도 遵守되지 않을 때 그와 같은 漁村契는 類似協同體로 斷定해도 좋을 것이다. (차호 계속)

13) 協同組合原則とその解明(協同組合經營研究所 등 編) 1967.7.

14) 同上 pp. 86~109 參照